「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3년 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3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관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며 평창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책무, 대책 수립·시행(안 제3조 ~ 제4조)

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우선 지원(안 제5조)

다. 관련 사업비 지원(안 제6조)

라.. 관계부서 협조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7조 ~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관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도모**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 군수의 책무 및 사업자, 군민의 협조를 명시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집중관리지역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감사업 및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평창군이 자체적으로 대기오염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검토결과,

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노동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예방 및 저감·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예방 및 저감·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등) 군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
2. 사업장, 공사장, 도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집중관리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

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과 제5조②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환경과 환경과장 전 원 표
연락처	(033) 330 - 2340